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323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피고, 피항소인 C중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9. 29.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1901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193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순번 4,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19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김민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북 청도군 AC 임야 592㎡
2. AD 임야 495㎡
3. AE 종교용지 469㎡
4. G 임야 2,058㎡
5. AF 임야 1,116㎡. 끝.

